

특정감사

# 감 사 보 고 서

- 통 계 청 -

2024. 7.

통 계 청

# 1.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목적

- 계약 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는 등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

##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19. 8. 1. ~ '24. 4. 30.까지(최근 5년)
- 대상범위: 5백만원 이상 인쇄 계약 건

## 3. 감사기간

- 감사기간: '24. 6. 10. ~ 6. 20.(중 9일간)
- 대상기간: '19. 8. 1. ~ '24. 4. 30.까지(최근 5년)

## 4. 감사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 사업규모 및 규격 결정, 사업비 산정, 계약방법 결정 등
- 계약업무 과정의 적정성
  - 분리발주, 촉박한 수의계약, 계약 절차 준수 여부 등
  - 단가계산, 계약체결, 계약이행, 검사 및 대가지급 절차 준수 여부 등
-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여부 등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 통 계 청

##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인쇄물 계약방법 편중

소 관 청 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과는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쇄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과는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쇄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1항에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조의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 결정),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 기간(2019.8.1.~2024.4.30.) 중 □과가 체결한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인쇄물 계약은 총 449건으로 이중 수의계약은 441건(98.2%)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방법으로 계약한 건은 8건(1.8%)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

<표1> 계약방법별 인쇄물 계약 건수 및 금액(2019.8. ~ 2024.4.)

(단위: 건, %, 백만원)

	계약 건수	계약 금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49	100.0	14,368	100.0
수의계약	441	98.2	13,337	92.8
제한경쟁계약	8	1.8	1,031	7.2

<표2> 계약방법 및 연도별 인쇄물 계약 현황(2019.8. ~ 2024.4.)

(단위: 건)

	계	2019.8.	2020	2021	2022	2023	2024.4.
계	449	34	109	96	82	87	41
수의계약	441	34	105	92	82	87	41
제한경쟁계약	8	-	4	4	-	-	-

인쇄물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주된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계약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금액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 안에서 모두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적용 가능한 것이나 □과는 법정의무구매비율 목표1) 달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였다.

<표3> 수의계약사유별 인쇄물 계약 현황(2019.8. ~ 2024.4.)

(단위: 건)

수의계약 사유	계	수의계약금액(부가세포함) 범위별 계약건수			비 고
		2천2백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이하	5천5백만원 초과 1억1천만원이하	
계	427	287	128	12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 5호가목2)	283	283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 5호가목5) (여성 및 장애인기업)	120	3	117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 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24	1	11	12	금액제한 없음

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청에 요청해야 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9건과 소액수의계약 3건은 제외함

또한 인쇄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보면, 계약 건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78.9%, 계약금액 기준 74.0%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계약상대자별 세부 계약 현황은 <붙임> 참조

<표4>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 현황(2019.8. ~ 2024.4.)

(단위: 건, %, 백만원)

	계약 업체수	계약 건수	계약 금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9	427	100.0	9,167	100.0
상위 10개 업체	10	337	78.9	6,782	74.0
그 외 업체	39	90	21.1	2,385	26.0

1) 여성기업은 총 구매액의 5%, 장애인기업은 총 구매액의 1%,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총 구매액의 1%, 창업기업은 총 구매액의 8%

따라서 □과는 상기에서 나타난 인쇄물 계약 현황과 특정 계약상대자 집중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쇄물의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상대자를 보다 다양화하여 불필요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소액수의계약 포함)계약 형태를 확대하여 일부 특정 업체에게 편중 되어있는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권 고

(일련번호 : 2)

제 목 인쇄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노력 미흡  
소 관 청 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통계청 본청 각 국·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획재정부)』, 『통계청 예산 세부집행지침(통계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계약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법·령·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계약실무』 및 『통계청 회계업무편람』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인쇄물 수의계약의 체결 과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쇄물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법 변경 알림\*(□과-13102, 2023.09.26.)’ 문서를 시행하여 운영 중이다.



**\* 인쇄물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법 변경(2023.09.26.) 주요 내용**

추정가격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법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 2천만원 이하	변경 전후 동일(사업부서에서 업체 지정 후 계약요청)	
2)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개정: 2021.7.6.	- □과: 후보업체 3개 임의 지정 후 통보 * 통보: 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통보  - 절차: 예정가격 작성(원가계산, 업무담당자) → <b>후보업체 결정(3개, 담당자)</b> → 안내서 공지 및 견적징수(나라장터) → 업체선정(제한적최저가)	- □과: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업체선정: <b>소액수의계약**으로 변경</b> **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면서 <b>경쟁입찰(다수)</b> 을 준용하는 계약방식의 한 형태  - 절차: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시, 복수예가 산정, 제한적최저가(88%)로 낙찰자 결정
	※ 단, 시급성·업무 효율성 등 감안, □과와 협의 후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 요청 가능	
3) 1억원 초과	변경 전후 동일(◇◇청에 계약체결 의뢰)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9.8.1.~2024.4.30.) 중 5백만원 이상 인쇄계약 건 운영 실태를 점검 한 결과 총 449건(14,368,175천원) 중 10개의 특정 업체와 342건(76.2%/8,659,747천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3개\* 업체와 196건(43.7%/3,431,596천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붙임 1>

\* 3개 업체 체결 건수: △△(77건/1,876,246천원), ◆◆(60건/851,650천원), ▽▽(59건/703,700천원)

또한 ‘인쇄물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법 변경’ 이후(2023.9.26.~2024.4.30.) 계약방법 개선 상황을 확인 한 결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인쇄계약 총 15건 중 당초 운영하고자 했던 방식인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3건\*(20.0%)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소액수의계약 업체(3건): 신규 계약업체 2건, 기존 계약업체 1건

이는 특정업체에 집중된 계약 관행 타파 및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봤을 때, 그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인쇄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가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추가 개선 노력(예시)

- ① 계약업무 설명회를 통해 운영 취지 및 방향 등을 설명하고 사업 부서 적극 참여 유도
- ② 공고 시 인쇄 ‘원본 파일’ 제공, 불성실 업체 제재 등 계약조건 명시
- ③ 계약업체 사후평가제도 운영 등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인쇄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개선 실적이 미미하여, 추가적인 노력과 실천하기를 권고합니다.

<붙임 1> 감사대상기간(2019.8.1.~2024.4.30.) 중 수의계약 업체 현황

일련 번호	거래처명	건수	계약금액(원)
1	△△	77	1,876,246,200
2	◆◆	60	851,649,700
3	▽▽	59	703,700,000
4	▲▲	32	841,840,700
5	◇◇	31	739,084,500
6	◎◎	26	305,473,400
7	⊕⊕	19	229,764,500
8	■ ■	15	2,242,215,700
9	▣▣	12	410,834,600
10	○○	11	458,937,680
11	●●	8	228,487,090
12	◐◐	7	132,309,100
13	◑◑	6	224,413,000
14	◒◒	6	454,696,000
15	≡≡	5	41,553,600
16	▤▤	5	38,732,100
17	▥▥	5	116,777,000
18	▧▧	4	672,384,000
19	▨▨	4	121,088,000
20	▩▩	4	145,027,000
ㄸ	ㄸ	ㄸ	ㄸ
59	▣▣	1	26,565,000
총합계		449	14,407,975,470

<붙임 2> ‘인쇄물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법 변경’ 이후(2023.9.26.~2024.4.30.) 계약 현황

일련 번호	계약체 결일자	계약종 료일자	계약금액 (원)	거래처명	수의계약사유	관련법령	비고
1	2023-11-01	2023-12-20	29,931,000	☐☐☐	장애인기업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5호가목5)	
2	2023-11-02	2023-12-01	50,875,000	●●	여성기업	"	
3	2023-11-07	2023-12-18	34,617,000	▣▣	중증장애인생산물 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4호	
4	2023-11-16	2023-12-22	41,470,000	▽▽	여성기업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5호가목5)	
5	2023-11-21	2023-12-19	49,247,000	▽▽	여성기업	"	
6	2023-11-27	2023-12-22	34,100,000	●●	여성기업	"	
7	2023-12-20	2024-01-09	78,600,000	▣▣	중증장애인생산물 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4호	
8	2024-02-23	2024-03-25	49,940,000	△△	여성기업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5호가목5)	
9	2024-02-26	2024-04-05	83,118,540	▣▣	중증장애인생산물 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4호	
10	2024-03-14	2024-04-30	47,745,000	▣▣	여성기업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 1항5호가목5)	
11	2024-03-27	2024-05-02	61,463,680	○○	장애인기업	"	
12	2024-04-11	2024-06-03	47,498,000	△△	여성기업	"	소액 수의
13	2024-04-18	2024-05-08	29,480,000	△△	여성기업	"	
14	2024-04-23	2024-05-27	40,196,200	▣▣	장애인기업	"	소액 수의
15	2024-04-24	2024-05-31	40,832,000	◆◆	여성기업	"	소액 수의

# 통 계 청

## 통 보

(일련번호 : 3)

제 목 인쇄물 지급단가 검토 미흡

소 관 국 통계청

관 계 부 서 ☒관,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관, ☒국, ☒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및 『통계청 예산 세부집행지침(통계청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업무편람, 조사지침서 등 책자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1. 운영비(210목)’ 및 『2024년도 통계청 예산 세부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1. 일반수용비(210-01목)’에 따르면,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며,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9.8.1.~2024.4.30.) 중 본청에서 5백만원 이상을 지출하여 발간한 지침서 및 내부용 책자류의 인쇄비 지급단가를 점검한 결과,

☒관 ☒관에서는 내부직원을 위한 ‘2023년 ◆업무 매뉴얼’ 책자 200부(220면)를 발간하면서 오프셋4도(컬러) 인쇄 및 32천원의 디자인 편집료(1면당) 등의 견적으로 책자 단가가 86,845원에 달하는 인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 (오프셋 인쇄) 판에서 직접 피인쇄물에 인쇄 하지 않고, 중개 구실을 하는 고무 블랭킷에 전사인쇄 후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단행본, 달력, 잡지 등 대량인쇄 또는 컬러인쇄가 필요한 분야에 널리 사용

☒국 ●과는 ⊖조사를 위한 ‘◆조사 제1, 2차 시험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서’ 및 ⊖조사 제2차 시험조사 조사지침서’ 책자(100~120부)를 발간하면서 오프셋4도(컬러) 인쇄 방식으로 견적을 받아 책자 단가가 각각 52,633원~60,696원에 달하는 인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국 ○과는 ☒조사를 위한 ‘제1차 시험조사 조사지침서’ 책자(90부)를 발간하면서 컬러출력 방식으로 견적을 받아 책자 단가가 117,910원에 달하는 인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표> 책자류 인쇄비 지급단가 과다 현황

(단위: 원)

연번	부서명	계약체결 일자	인쇄 계약 건	예산 과목	계약금액	인쇄사양	책자 단가
1	☒관	'23.2.21.	2023년 ◆업무 매뉴얼 인쇄	210-01	17,369,000	수량: 200부 면수: 220면 방법: 오프셋 4도(컬러) 지질: 랑데뷰 105g	<b>86,845</b> (1면당 395)
2	☒국 ○과	'22.7.25.	☒조사 제1차 시험조사 인쇄물류 계약 중 조사지침서	210-01	18,095,000 (지침서 10,611,920)	수량: 90부 면수: 266면 방법: 컬러출력 출력비: 1p당 300원 지질: 백상지80g	<b>117,910</b> (1면당 443)
3	☒국 ●과	'22.4.28.	⊖조사를 위한 ◆조사 1차 시험조사 조사지침서류 중 조사지침서	210-01	8,437,000 (지침서 6,048,092)	수량: 100부 면수: 160면 방법: 오프셋 4도(컬러) 지질: 미색모조지100g	<b>60,481</b> (1면당 378)
4	☒국 ●과	'22.9.16.	⊖조사 제1차 시험조사 조사서류 등 인쇄 중 조사지침서	210-01	16,929,000 (지침서 6,315,973)	수량: 120부 면수: 175면 방법: 오프셋 4도(컬러) 지질: 미색모조지100g	<b>52,633</b> (1면당 310)
5	☒국 ●과	'23.5.16.	⊖조사를 위한 ◆조사 제2차 시험조사 인쇄물류 인쇄 중 조사지침서	210-01	8,459,000 (지침서 6,069,595)	수량: 100부 면수: 160면 방법: 오프셋 4도(컬러) 지질: 미색모조지100g	<b>60,696</b> (1면당 379)

※ 지침서 및 내부용 책자류 중 컬러인쇄 등의 방식으로 권단가 5만원(1면단가 300원) 이상인 경우이며, 다른 인쇄물과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의 책자 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되었음

## 조치할 사항

☒관, ○과장, ●과장은 앞으로 부서원, 관련자 등 교육을 실시하여 불가피하게 컬러 인쇄를 해야 할 경우, 인쇄방식 개선 및 업체별 견적서 비교 방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 주 의(부서)

(일련번호 : 4)

제 목 우편발송료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 범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해야 하고, 우체국 택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9.8.1.~2024.4.30.) 중 2020년 ◯조사 인사장 등 총 4건 인쇄물 우편발송료에 부가가치세를 총 1,536,100원 과세하여 과오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참조

<표> 우편발송료 부가가치세 과세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도	품명	우편발송료	부가세 과오지급금액	업체명
2020	2020년 ◯조사 인사장 등 3종 - 협조문 봉투	3,226,080	322,600	△△
	- 안내장 봉투	1,985,280	198,520	
2021	2021년 ◯조사 연동신규 외 - 협조문 봉투	3,116,100	311,610	〃
	- 휴식기 재조사 협조 봉투	1,917,600	191,760	
2021	2022년 ◯조사 연동신규 외 - 협조문 봉투	3,116,100	311,610	△△
2023	2024년 ●조사 조사표류	2,000,000	200,000	■
<p>◦ 우편발송료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1,536,100원</p>				

### 조치할 사항

□과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 통 계 청

## 개 선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인쇄수의계약 표준견적서 마련

소 관 청 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과는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실무』 및 『통계청 회계업무편람』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을 보면, 『영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적정한 거래시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앞의 두 가지 경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견적서 검토에 관련 사항

통계청 내부지침인 「계약실무(내부용, '23.9월)」에 따르면, 인쇄물 계약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계약 의의를 하면, 계약부서는 원가산출 내역서 및 계약방법 확인 등을 거쳐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는 인쇄물 수의계약의 체결 과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인쇄물 수의계약업무 처리방법 개선(안)(□과-13102, 2023.09.26.)'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상기 개선안 시행 후, □과는 계약 집행을 위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의 「원가계산의 방식\*」에서, 「복수업체의 견적 평균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공고 후 시스템을 통한 복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엑셀을 통한 산출내역서(인쇄물 원가계산서) 작성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기초금액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2~3개 견적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작성하며, 다만 견적가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로 견적을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23년 9월 개선안 도입 초기에는 견적가격을 검토하기 위해 개선안 시행 전에 사용했던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한 값을 견적가격 검토에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한 값을 견적가격 검토에 사용하지 않고 2~3개 업체의 견적 평균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견적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 상의 산출내역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견적서를 기초금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해당 견적서의 세부산출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신뢰성 확보)** 견적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세부산출내역 확인을 통해 견적서의 신뢰성을 확보 가능
- 2) **(예산 낭비 방지)** 견적서의 세부산출내역 확인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 가능
- 3) **(공정성 확보)** 세부산출내역 비교 검토를 통해 견적서의 공정성을 확보 가능

#### 나. 표준견적서 양식 및 인쇄비용 검토 지침 도입 에 관한 사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 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견적서의 산출내역 검토가 어려운 경우 ❶ 전문가의 도움이나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❷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산출내역을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고, ❸ 유사한 사례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백만원 미만 소액 건을 포함한 인쇄 수의계약을 할 경우, 표준견적서<sup>2)</sup> 양식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 및 계약담당자들도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인쇄종류별 또는 인쇄방식별 「견적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공정한 업체선정 후 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가격의 적정성 및 견적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표준화된 견적서 마련 및 교육 등 개선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

2) 표준견적서란 견적서 상의 공정별 재료비 산출 시 단위를 표시하여 담당직원이 견적서 검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규격화한 것을 말함

# 통 계 청

## 주 의(구두)

(일련번호 : 6)

제 목 일상감사지침 미준수

소 관 국 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통계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1.12.)』 및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통계청훈령 제644호, 2023.9.11.)』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제3조(대상업무) 제1항 별표1(일상감사 대상 범위)’에 따르면 「2. 계약업무 3. 매건당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다만, 5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하는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감사결과 처리) 제6항에는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결재를 받을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 기간(2019.8.1.~2024.4.30.) 중 ⊖조사의 일상감사 대상범위 업무를 검토한 결과, ●과에서는

‘2020년 ⊖조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발간’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서(‘22.05.02)의 주요 점검방향인 ‘계약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을 변경하였고,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해당 발간 계획에 대한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지 않았으며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sup>3)</sup>이 확인되었다.  
 <표> 참조

<표> 2022-69호 일상감사 의견서 주요내역

주관부서	●과	의견서 번호	2022-69	접수일자	2022.4.29.
건 명	2020년 ⊖조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회보일자	2022.5.02.
중점 검토내용 ⇒ 검토의견	1. 예산확보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 ⇒ 예산범위내 집행 적정 - 확보예산 125,453천원, 필요예산 109,098천원 2.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일반경쟁 적정 -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통합발주) 3. 발간부수 및 가격 등의 적정성 ⇒ 국가예산을 최소 범위 내 지출 및 예산 낭비 유의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일상감사지침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자 ●과 ◎급 A(현 ☆☆청 ▲사무소)에게는 주의(구두) 조치 합니다.

3) 2020년 ⊖조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부 계획 보고(‘22.5.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2020년 ⊖조사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부 계획 변경 보고(‘22.5.17, 계약방법: 수의계약)